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3806호
----------	--------

제출년월일 2026. 8. 21.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가.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2026. 12. 31.)
- 나.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갖춘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의 전문성·공공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나. 위탁기간: 현재) 2024. 1. 1. ~ 2026. 12. 31.(3년)
향후) 2027. 1. 1. ~ 2029. 12. 31.(3년)
- 다.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위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및 규모
 - 김포시 사우중로 108, 김포시보건소 별관 2층 및 4층 일부(375.95㎡)
 -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북부보건센터 1층 일부(136.41㎡)
 - 총면적: 512.36㎡
 - 주요시설: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 인력현황: 36명(현원, 2026. 6. 30. 기준)
- 마. 위탁사무: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응급개입
 - 정신질환자 재활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및 유족 지원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바. 위탁조건

- 수탁기관은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위탁 사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탁기관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른 전문인력과 조직을 확보하고,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함.
- 수탁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없으며, 위탁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수탁 권리를 양도 또는 재위탁할 수 없음.
- 수탁기관은 김포시의 지도·감독, 성과평가, 회계검사 및 감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기관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사례관리, 위기개입 및 자살예방사업 수행을 위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임.
- 직영 운영 시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유지의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됨.
- 반면 민간위탁 방식은 전문기관의 인력관리 체계와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지식, 운영경험 및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함.
- 또한 사업계획 및 실적 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운영위원회, 지도·점검, 보조금 정산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결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따라서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3. 관계법령

-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나.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다.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

4. 예산수반사항

가. 예산액: 2,505,433천원(국비 34%, 도비 9%, 시비 57%)

(단위: 천원)

사업명	합계	예산구분			비고
		국비	도비	시비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505,433	843,378	223,098	1,438,957	

※ 2026년 예산 기준이며,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비율	비고
계	2,505,433	100%	2026년 예산 기준
인건비	1,859,793	74.2%	센터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	645,640	25.8%	센터 운영 사업비

※ 인건비는 전체 민간위탁금의 74.2%를 차지함.

소관 실·과·소		보건사업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보건사업과장 최계숙
	팀장 직위·성명	정신건강팀장 신수정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간호주사 신수정(☎414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비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기준
- 김포시 2026년 예산 기준으로 매년 5% 증액하여 추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계
총 소요액		2,630,704	2,762,239	2,900,350	3,045,367	3,197,635	14,536,295
김포시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1,952,782	2,050,421	2,152,942	2,260,589	2,373,618	10,790,352
	사업비	677,922	711,818	747,408	784,778	824,017	3,745,943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예산편성

- 예산법무과 협의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김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과장 최계숙 팀장 신수정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 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1,119,798	1,175,787	1,234,576	1,296,304	1,361,118	6,187,583
국비		885,546	929,823	976,314	1,025,129	1,076,385	4,893,197
도비		234,252	245,964	258,262	271,175	284,733	1,294,386
세 출		2,630,704	2,762,239	2,900,350	3,045,367	3,197,635	14,536,295
국비		885,546	929,823	976,314	1,025,129	1,076,385	4,893,197
도비		234,252	245,964	258,262	271,175	284,733	1,294,386
시비		1,510,906	1,586,452	1,665,774	1,749,063	1,836,517	8,348,712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119,798	1,175,787	1,234,576	1,296,304	1,361,118	6,187,583
	보조금	1,119,798	1,175,787	1,234,576	1,296,304	1,361,118	6,187,583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2026년 국도비 지원 기준이며,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